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가단52407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손성락

피 고 1. B

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37,069,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2022. 1. 2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22. 8. 19.까지 연 7.7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62,000원에서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강건우

별지